

제21차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 회의결과정보

조미영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I. 서언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General Principles)는 CODEX 일반과제분과위원회(General Subject CODEX Committee)중의 하나로서 1965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분과위원회의 의장국은 프랑스이다.

금번 회의는 FAO/WHO 합동평가팀의 권고사항에 따른 제26차 CODEX 총회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논의로서 CODEX 조직·운영의 개혁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금번 21차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결정사항을 정리하여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의 논의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회의개요

제21차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는 2004. 11. 6~12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59개 회원국 및

14개 국제기구에서 총149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농업식품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od, Fisheries and Rural Affairs,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limentation, de la pêche et des affaires rurales) 교육조사국 국장(Director-General of Education and Research, Directeur général de l'enseignement et de la recherche)의 주재아래 개최되었다.

주요 의제로는 규격관리절차(중점심의)(작업우선순위설정기준 개정), 작업반 및 전자작업반 지침안, 공동의장 및 조정자 검토, 집행이사회의 참관인 자격 검토(집행이사회 회의진행 공개 및 웹캐스팅 도입),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의 참여 원칙 검토,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 의장권리 관련 규정개정검토, 집행이사회의 임원 임기 확인, CODEX 규격의 수락 및 통보절차, 규정 VI.1에 의거 대표에 대한 용어해석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1. 회의의제 목록

| 의제 번호 | 의 제 | 관련문서 |
|-------|---------------------------------------------------------------------------------------------------------------------------------------------------------------------------------------------------|--------------------------------|
| 1 | 의제 채택 (Adoption of the Agenda) | CX/GP 04/21 |
| 2 | 총회 및 타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Matters Referr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nd other CODEX Committee) | CX/GP 04/21/2 |
| 3 | 규격관리절차(중점심의) : 작업우선순위설정기준 개정 (Processes for Standards Management(including the Critical Review - Revision of the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 Priorities) | CX/GP 04/21/3 |
| 4a) | CODEX 분과위원회 지침 검토 - 공동의장 및 조정자 (Review of the Guidelines for CODEX Committees and Other Additional text: Co-Chairmanship and Facilitators) | CL 2003-45/GP CX/GP 04/20/4 |
| 4b) | 식품규격 및 규정을 위한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 for Food Standards and Regulations) | CX/GP 04/20 |
| 5 | 집행이사회의 참관인 자격 검토 - 집행이사회 회의진행 공개 및 웹캐스팅 도입 (Consideration of the Status of Observers in the Executive Committee - Webcasting and Publicizing of the Proceedings of the Executive Committee) | CX/GP 04/21/6 |
| 6 |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의 참여 원칙 검토 (Review of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Work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CX/GP 04/21/7 |
| 7 |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 (Guidelines fo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CX/GP 04/21/8 |
| 8 | 의장권리 관련 규정개정검토 (Consideration of an Amendment to the Rules of Procedure on the Right to Address the Chair) | CX/GP 04/21/9 |
| 9 | 집행이사회의 임원 임기 확인 (Clarification of the duration of the term of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 CX/GP 04/21/10 |
| 10 | CODEX 규격의 수락 및 통보절차 (Acceptance and notification procedures for CODEX Standards) | CX/GP 04/21/11 |
| 11 | 규정 VI.1 의거 대표에 대한 용어해석 (Interpretation of the term "delegate" under Rule IV.1 of the Rules of Procedure) | CX/GP 04/21/12 |
| 12 | 기타 사업, 향후 작업, 차기회의장소 및 날짜 (Other Business, Future Work and Date and Place of Next Session) | |
| 13 | 보고서 채택 | |

III. 의제별 토의내용 및 결과¹

1. 총회 및 타분과위원회에서 외부된 안건 (의제 2)

(Matters referred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nd Other Codex Committees)

가. 총회결과보고

가) CODEX 규격 및 관련 기준 설정지침 개정

인도는 집행이사회 기능으로 규격 및 전략기능을 추가하자는 합의에 따라 도입된 “중점심의(critical review)”는 신규작업 및 규격개발과정 모니터링에 한해야 하며 CODEX 모든 절차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개도국의 필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등 규격설정절차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말레이시아대표는 인도를 지지하며 중점심의를 하부분과에서 상정한 규격안으로 확대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인도 의견에 동의하였고 논의결과 인도 제안사항을 22차 CCGP회의('05. 4)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합의(Consensus) 정의

CODEX 의장은 합의(Consensus) 정의에 대하여 의장마다 운영방식이 약간씩 달라 합의의 기준을 한 회원국 또는 4개 회원국의 반대가 있는 경우 등 의장의 진행방식이 달라 의장간 균형을 이를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합의 정의에 대해 EU는 CODEX내에서 이미

논의한 바가 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조치(Measures to Facilitate Consensus)를 적용하고 필요시 그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미국, 호주, 프랑스는 이에 동의하였다. 인도는 신속절차결정시 2/3 동의를 아니라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합의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논의결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경험이 쌓일 때까지 합의에 대한 정의를 신규작업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나. 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된 사안

가)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위원회의 적용을 위한 위해분석작업원칙

(Draft Risk Analysis Principles Applied by the Committee on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

동의제는 제36차 CCFAC('04. 3.)에서 상정한 동원칙 및 정책안을 20차 CCGP('04. 5.)에서 검토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제기로 금번 회의로 회부하게 되어 검토하게 된 것이다.

CODEX 사무국은 기술적 사항은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로 회부하고 “CODEX 위해분석 작업원칙”과 일관성만을 확인하자고 작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시제가 일관되지 않고 권고사항임을 생각할 때 may를 should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는 “other internationally recognized

1. 21차 작업상황요약표는 별첨 1 참조

expert bodies”는 CODEX 작업원칙과 일관되도록 “joint FAO/WHO expert bodies and consultations”으로 수정 제안하였다. CODEX 의장은 과학적 자문이란 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위원회의 영역에서 작업하는 관련 기구 예를 들면 IAEA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프랑스도 전문가협의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하였다.

결국 원안유지하고 “This document should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Working Principles for Risk Analysis for Application in the Framework of the Codex Alimentarius”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 말리는 동내용에 유보(reservation)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항별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Section 3>

말레이시아는 k) q)항에 “other legitimate factors”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Other Factors Referred to in the Second Statement of Principles” 추가 제안하여 반영되었다.

캐나다는 s)항에 Medium term plan은 설정을 중지하기로 하였으므로 “Strategic Plan”을 추가, 동시에 “작업계획 및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 priorities” 추가제안하여 반영되었다.

의장의 제안대로 “including data from developing countries” 및 말레이시아의 의견대로 “the needs and concerns of developing countries” 추가 되었다. 미국은 u)항에서 “when referring substances to JECFA” 에 한하지 않고 JECFA에 게 위해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동문구 삭제제안이 반영되었다.

WHO 대표는 하부분과위원회에서 위해분석

지침 또는 원칙이 설정중인데 CODEX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논의결과 동위해분석작업원칙을 수정안대로 28차 총회('05. 6.)로 상정하였다.

나) 노출평가정책안 (Draft Policies for Exposure Assessment)

식품첨가물분과에서 상정한 노출평가정책안에 대해 시제일치등 수정후 28차 총회('05. 6.)로 상정하였다.

2. 규격관리절차(중점심의 포함) - 작업우선 순위 설정기준 개정(의제 3)

(Processes for Standards Management (including the Critical Review) : Revision of the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Work Priorities)

동의제는 CODEX 작업우선순위와 관련하여 FAO/WHO 합동평가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해 제26차 총회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회에서 정관 제1조에 따른 CODEX 임무를 현행 유지하고 작업우선순위 기준에 CODEX 현재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정할 것을 CCGP에 요청한 바 있다.

19차 CCGP 회의('03. 11)에서는 i) 서언에 전략계획, 중점심의결과 포함 ii) 본문에 정관 1조에 따른 CODEX 임무를 반영하고 개도국의 확인된 필요도 고려키로 결정 합의하였으나 EU가 제안한 정부간국제기구의 신규작업제안 요청사항도 검토요소로 포함시키자는 것, CI에서 “무역사안(trade issues)”은 소비자보호에 비하면 이차고려사항으로서 “impediments to international trade” 조항을 삭제하며 “trade issues”를 “fair practices in the food trade”로 대치 제안한 사항은

논의하지 못하였다.

금번 회의시 프랑스 사무국에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설명후 회원국간 의견교환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CODEX 분과위원회 및 업무분장을 검토중이므로 동결과가 나올 때까지 작업우선순위설정기준 개정작업을 연기하자고 제안하며 일반과제분과 적용기준과 식품별 분과 적용기준을 통합하자고 제안하였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가 동의하였다.

CODEX 사무국은 동기준 개정을 가능한 한 제한하고 28차 총회에 제출하여 개정안의 채택 또는 CODEX 조직개선작업이후로 미룰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대표는 식품별분과 적용기준에 GDP %의 생산량 및 생산과 소비량 % 무역패턴과 같은 수치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제안, 네덜란드대표는 EU를 대표하여 WTO/SPS 협정 12.6조에 의거 "국제정부간기구에 요청된 작업"이라는 기준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여 반영되었다. 말레이시아 및 아르헨티나대표는 국제정부간기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정관에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CI 참관인은 개도국의 필요가 총회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일반기준을 개정제안하며 일반과제 a)항과 식품별 분과 적용 기준 b)항의 "impediments to international trade"삭제를 제안하였다.

결국 일반과제분과 및 식품별 적용기준중 c)항과 g)항에 "work suggest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body(ies)"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논의결과 동기준안을 제28차 총회로 상정하고 채택 또는 보류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3. CODEX 분과위원회 지침 및 기타 문서 검토 - 작업반 및 전자작업반 지침안(의제 4a)

(Review of the Guidelines for Codex Committees and other additional text : Draft Guidelines on Physical Working Groups and Draft Guidelines on Electronic Working Groups)
동의제는 제26차 총회결정(Proposal 19/20/21/32)에서 원칙적으로 작업반(Physical Working Group) 및 전자작업반(Electronic Working Group) 모델 개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논의하게 된 것으로 19차 CCGP('03. 11)에서 두가지 지침을 검토한 바 있으나 금번 회의에서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각각 작업반에 대한 검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반 운영지침

<서언(Introduction)>

CODEX 사무국 제안에 따라 작업반운영에 CODEX 규정뿐만 아니라 지침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회원자격(Membership)>

캐나다는 회원자격은 관행적으로 의장뿐만 아니라 주최사무국에게도 통보되어야 하므로 주최 사무국(Secretariat of Host country)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반영되었다.

<참관인(Observers)>

ICGMA, 49P, CI등은 일반적으로 투명성, 공개성 확보를 위하여 참관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하였다.

<임무 및 업무분장(Duties and Terms of Reference)>

아르헨티나는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개도국의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 CODEX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통역 및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프랑스, EU 등은 번역작업은 주최국의 부담 특히 개도국인 경우를 고려하여 융통성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 지역조정위원회 회의의 경우 모든 언어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결국 “통역 및 번역서비스는 분과위원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CODEX 분과의 모든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문구로 결정되었다.

<날짜 및 장소(Date and Place)>

작업반에 해당되는 규정만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place를 삭제하였고 스웨덴은 작업반 회의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in conjunction with” 추가 제안하여 반영되었다.

<작업반 통보 및 임시의제(Working Group Notification and Provisional Agenda)>

스웨덴의 의견에 따라 회의통보 및 임시의제 통보문의 작성, 번역, 배포 등의 조치는 회의사이에 이루어지는 회의에 한하며 회의사전에 하는 경우는 본회의 공식초대장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보고서(Report)>

“Report”라는 제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하부 분과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의미하므로 “conclusion”으로 정정 합의하였다.

논의결과 동작업반 지침 수정안을 28차 총회

(’05. 6.)로 상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전자작업반 운영지침

<회원자격(Membership)>

참관인이란 국제기구와 지역이 아닌 지역조정 위원회 지역이외의 멤버가 해당된다는 지적아래 지역조정위원회의 해당지역이외의 회원을 지적한 두 번째 문장 삭제하였다. 또한 작업반 운영 지침과 일관되도록 “when establishing an electronic working group, a Codex Committee should ensure, as far as possible, that the membership is representative of the membership of the Commission” 추가하였다.

<조직 및 임무(Organization and Duties)>

미국, 튀니지아 등은 전자작업반 참여 신청시 참석자의 추적이 어려우므로 CODEX 접촉창구를 통해야 한다는 의견, 프랑스 등은 국가마다 조직이 다르므로 해당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 토의후 결국 접촉창구를 통해 통보하도록 결정하였다.

호주는 전자작업반 운영중 작업반회의를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제안하였으나 동결정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다고 합의하였다.

<보고서(Report)>

전자작업반 보고서는 토의문서(discussion paper) 또는 작업문서(working document)형태로 보고하기로 하였고 이때 참석자명단도 포함하고 회의보고서를 주취사무국으로 송부하기로 하였다.

논의결과 동전자작업반 지침 수정안을 28차 총회(’05. 6.)로 상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 CODEX 분과위원회 지침 및 기타 문서 검토 - 공동의장 및 조정자(의제 4b)

(Review of the Guidelines for Codex Committees and other additional text : Co-chairmanship and Facilitators)

제26차 총회(Proposal 19/20/21/32)에서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포괄성측면에서 고려한 공동의장(co-chairmanship)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으며 규격설정작업의 회의의존도를 낮추고 작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facilitator 활용은 실험적 적용을 하지고 합의한 바 있다. 동의제는 19차 CCGP('03, 11)에서 금번회의로 회부한 사항으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의장(Co-chairmanship)

캐나다, 스위스, EU 등은 개도국의 참여증진을 위해 개도국 회의개최는 바람직하나 현재 이 분야에 대하여 지침을 설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멕시코는 회의개최는 주최국의 책임과 비용 등이 관련되어 있어 조심스런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 태국은 개도국의 회의개최를 환영, FAO 대표는 공동의장은 개도국의 능력배양의 일환으로 유용하며 주최국 지원의사가 있음을 알렸다.

나. Facilitators

미국, 프랑스, CI는 기본적으로 facilitator 활용에 동의하지만 그 고용으로 인한 주최국의 추가부담, 전문가선정기준이 없고 의사결정의 편향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브라질은 논쟁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회의동안 비공식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논의결과 공동의장(Cochairmanship)의 경우 CODEX 분과회의의장소를 당분간 개도국과 주최국과 번갈아가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권장하되 향후 실제조치를 비추어 검토하기로 하였고 Facilitators의 경우 회의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동작업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몇 개분과위원회에서 적용하길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5. 집행이사회의 참관인 지위 검토 : 집행이사회 회의진행 웹캐스팅 및 공개(의제 5)

(Consideration of the Status of Observers in the Executive Committee : Webcasting and Publicizing of the Proceedings of the Executive Committee)

동의제는 FAO/WHO 합동평가보고서를 토대로 26차 총회에서 참관인의 집행이사회 참여문제를 검토 요청하였고 19차 CCGP에서 CODEX 사무국에게 특정 지침은 작성하지 않고 다만 CODEX 사무국에게 비용, 법적 근거, 제도측면을 고려하여 모든 방안에 대한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금번 회의시 논의하게 된 것이다.

동사항은 그동안 집행이사회 논의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꾸준히 검토되어 온 사항으로서 국제비정부기구중 소비자단체, 업계 및 무역단체, 학계 등의 균형문제등도 아울러 논의된 바 있다.

FAO 및 WHO 법률고문 대표는 작성한 문서를 소개한 이후 회원국간 토의를 개시하였다. 법률고문은 UN 기구와 협의아래 작성된 문서를 소개하면서 일반인이나 참관인은 회의참석이나 참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집행이사회 회의의 진행을 청취할 수 있지만, 단 FAO와 WHO 원칙

에 어려움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분만을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렸다.

CODEX 사무국은 웹캐스팅, 청취실, 회의참여 방안별 분석결과를 알리며 회의참여의 경우 WHO 본부는 40명 정도만 수용가능하고 FAO 본부는 WHO 보다 넓지만 어떤 방법이든 별도 회의장 임대비용이 부과되며 웹캐스팅의 경우 미국의 CCFH는 3개 카메라를 사용하여 주최국에서 총 \$126,200 부담, 일본의 CCFBT 경우 오디오채널 2개, 카메라설치하고 NGO에서 \$12,100부담한 바 있음을 소개하였다. 집행이사회 회의를 하루반일, 4개 언어, 카메라설치, 웹캐스팅하면 1회 개최시 \$50,000(약 5천4백만원) 소요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네덜란드 등은 집행이사회 투명성확보를 위해 참관인 확대문제에 동의하며 웹캐스팅이나 청취실 설치에 동의하며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 FAO 법률고문은 웹캐스팅이나 회의공개는 법적으로 조직적인 문제는 없으나 FAO 운영조직(governing body)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은 웹캐스팅이 집행이사회의 회의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임을 설명하며 유럽식품안전청의 관리위원회(management board) 회의의 웹캐스팅이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브라질은 재정적 문제를 고려할 때 웹캐스팅을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말레이시아?아르헨티나?카메룬은 집행이사회의 관리 기구이므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이사회의 회의에 참관인 참석에 반대하며 총회나 하부분과의 투명성확보는 회의보고서의 시기 적절한 배포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취실, 웹캐

스팅설치는 개도국의 혜택을 고려하여 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

논의결과 집행이사회의 진행경과의 투명성 확보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웹캐스팅의 실제적용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최저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6.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 참여 원칙 검토(의제 6)

(Review of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Work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제26차 총회에서 FAO/WHO 합동평가보고서 권고사항을 기초로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 참여원칙” 개정요청에 따라 동작업이 개시되었다. 19차 CCGP 회의에서 제23차 총회('99)에서 채택된 국제비정부기구 참여원칙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결과 INGO는 구조 및 활동범위가 국제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입장에 동의하여 CODEX 사무국에서 본문을 작성하여 재논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차 CCGP 회의에서도 INGO 기여도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회의 참여도, 서면의견 제출 등을 논했으며 구조 및 활동이 국제적이어야 한다는 면에서 2개지역이상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논의한 바 있다.

FAO 법률자문관의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소개이후 Section별 검토를 실시했다. FAO 법률자문관은 국제비정부기구의 참관인 지위승인, 현재 참관인 지위검토, 참관인 지위 승인기준을 검토

하여 개정하였고 집행이사회에서 참관인 지위의 자문아래 참관인지위 승인을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알렸다. 참관인 지위 승인 평가기준에 있어 지난 회의에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참관인 기준 적격기구(Organization Eligible for "Observer status")〉

인도대표(CRD 7)는 적격기준에서 국제기구가 최소 3개국과 2개지역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하였고 브라질은 2개지역에 동의하였다. EU는 NGO란 구조 및 활동범위상 일정 지리적 기초(large enough geographical basis) 아래 분야별 이해의 조화를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최소 3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Umbrella 기구에 속한 개별 기구가 더 큰 기구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umbrella 기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 지역별 안배는 융통성을 두어 고려하는 입장, 2개 지역을 제안한 인도의 의견은 너무 제한적이고 이 의견은 CODEX 작업의 기여가능성에 대한 지표가 아니며 지역마다 국가수가 다양하고 식품안전이외의 영역에 기여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대하였다. 논의결과 국제기구의 적격기준으로 최소 3개국으로 합의하였다.

CI는 3.1e) 관련 NGO란 참관인 지위 신청 이전 3년전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CODEX 관련 작업의 실제 활동의 좋은 지표가 아니라는 문제제기, 일본의 유럽지역에서 이러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3.1 존치하기로 하였다.

〈참관인 지위 승인절차(Procedure for Obtaining "Observer Status")〉

49P은 4.1항은 참관인 자격은 FAO 또는 WHO 두 기구와 개별적으로 공식관계가 있는 기구이므로 or로 수정 제안에 따라 4.1 및 4.2 개정하였다. CI의 의견에 따라 참관인 부적격결정시 "the motivation of the Director's General"을 삭제하고 "a written explanation of the decision"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참관인 지위 검토(Review for "Observer status")〉

인도는 국제비정부기구의 적격기준 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료할 수 있다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삭제를 제안하였으나 FAO 법률고문은 사무총장이 FAO 및 WHO 동시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존치를 주장하며 집행이사회의 자문아래 사무총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Other circumstance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따라 인도가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Director-General may terminate observer status if an Organization no longer meets the criteria that applied offer exceptional reason, accordance procedural manual set out in the section"

〈부록(Annex)〉

아르헨티나의 제안에 따라 b)항에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하기로 하였고 CODEX 사무국은 n)뒤에 규정집에 있는 o), p)항 추가하고 CI 제안에 따라 h) document substantive activities 추가하기로 하고 k) 신청절차시 정보를 몇 페이지로 제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CODEX 사무국은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그대로 존

치하였다.

논의 결과 동원칙 수정안을 28차 총회('04. 6.)로 상정하기로 하였고 규정 VIII 개정안이 적용된 시점부터 동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7.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의제 7)

(Guidelines fo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제24차 총회에서 CODEX 기준규격 설정작업에 참여하는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방안에 관한 지침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CODEX 사무국에서 지침을 작성하여 제17차 회의(02. 5)에서 검토를 개시한 바 있으며 18차 회의(03. 4)에서 세 가지 협력방안을 아래와 같이 논의한 결과 제2안은 삭제하고 제3안은 현재 관행상 이루어지므로 제1안에 초점을 맞추어 사무국에서 재작성하기로 한 바 있다.

- 1) 규격설정절차와 회원자격에 동일한 원칙을 가진 규격설정기구와 공동규격 또는 관련 기준 설정(예, OIE, CCMMP)
- 2) CODEX를 대신하여 협력기구에서 설정한 공동규격 또는 기준설정
- 3) CODEX 규격 또는 기준의 초기 기안단계에서 실제적인 협력
(예, UNECE, CCMAS)

20차 회의(04. 5)에서는 공동 규격방안이 작업 지연, 비용증가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초기단계에 협력하는 유형으로 개정안을 재기안하여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

CODEX 사무국은 그동안 논의동향을 소개하며 초기 규격설정시 실제 협력하는 방안으로 재 구성하였으며 9-13항 단계모델로 추가함을 설명

하였다. OIE는 최근 "OIE 동물생산 관련 식품안전 작업반(OIE Working Group on Animal Production Food Safety)" 활동정보를 알리며 식품안전분야의 OIE 및 CODEX와의 긴밀한 협력 및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 제목(Title) >

말레이시아의 의견에 따라 CODEX 용어와의 일관성을 위해 규격의 "설명(Elaboration)"을 추가 합의하였다.

< 협력유형(Type of Cooperation) >

말레이시아는 CODEX와 국제정부간기구의 협력목적이 명확해야 함을 제기, 일본은 4항은 자격이고 5항은 요구사항(requirement)이라는 지적 하에 분리, 또한 6항에 대하여 지난번 논의시 협력관계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존치 주장하였다.

EU는 동일한 자격원칙을 가진 국제정부간기구로 한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5항 삭제주장, OIE의 경우 CODEX 협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조항이 너무나 제한적이므로 5항의 동일한(same) 원칙이 아니라 equivalent로 정정 제안하였다.

FAO 법률자문관은 동조항은 채택이전에 회원 자격의 equivalent 조항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처리를 제안하였다.

< CODEX 규격 또는 관련 기준의 초기 기안 단계에서의 협력 >

(Cooperation at the initial drafting stages of a CODEX Standard or related text)

OIE(CRD 16)는 7항에 WTO/SPS 협정상 별첨 A에 따라 언급된 기구와의 협력을 다루는 규정

을 제안하여 반영되었다.

"Fo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entioned in the Annex A of the WTO SPS Agreement, the proposed draft standard or related texts shall be circulated at Step 2 of the "uniform procedure for the elaboration of Codex Standards and Related texts"

말레이시아는 CODEX 규격설정 초기단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협력기구에 초기 기안을 맡기는 것에는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SPS 협정 별첨 A에 언급된 국제기구에게만 동절차를 허용하며 CODEX 작업 연관성을 고려하지는 제안을 하였고 인도, 태국, 브라질, 라오스에서 동의하였다.

캐나다는 국제정부간기구를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IAEA, UN/ECE, IOOC등을 들면서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 등도 협력사항에 융통성(flexibility)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하였고 IIR, OIV에서 동의하였다.

7항중 초기단계이후 단계에서 관련 CODEX 하부분과위원회 및 기회 회부한 타기구(Other body)로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말레이시아는 동조항의 의미와 "other body"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영국은 7항 구절은 규정집 20쪽 5항에 동일한 조항이 있음을 제시, CODEX 사무국은 이 조항에 따라 국제정부간기구와 CODEX 규격설정 협력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아울러 "Other body"에 대한 질문에 대해 "FAO/WHO Committee of Government Experts on the Codex of Principles Concerning Milk and Milk Products" 및 "Joint ECE/Codex Alimentarius Group of Experts on Standardization"을 말하며 CODEX 분과위원회는 아니나 관련 규격 설정시

CODEX 규격설정을 따르며 CODEX 하부분과위원회에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결국 초기단계에 관련분야의 권한이 있는 국제정부간기구, 특히 SPS 협정상 별첨 A 언급된 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합의, 초기 단계 이후 단계는 CODEX 분과로 회부기로 합의하였다.

〈회의에 상호 정보교환과 참석을 통한 협력〉

(Cooperation through mutua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in meetings)

11항의 경우 대표단은 타기구의 작업에 CODEX 대표가 참석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며 기구마다 참석모델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 CODEX는 타기구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한다는 것을 명기할 필요가 없음을 합의하고 "as an observer" 삭제하기로 하였다.

12항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CODEX 위원회에서 협력기구에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하여 i) CODEX의 의견이 총회 승인아래 제출되어야 하는지 ii) 타기구의 활동에 개인능력으로 참여하는 CODEX 대표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건지 확인 질문하였고 CODEX 위원회의 의장은 OIE 작업반에 전문가로 참석하여 CODEX 현황 정보를 알리고 OIE 작업영역에는 개입하지 않았음을 알렸다.

CODEX 사무국은 11항이 CODEX 대표가 참석하는 경우를 말하며 12항은 협력기구에 서면의견 및 정보제출을 의미함을 설명하였다. 논 의결과 동지침(초안)을 28차 총회('04. 6.)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8. 의장 권리 관련 규정 개정검토(의제 8)

(Consideration of an Amendment to the Rules of Procedure on the Right to Address the Chair)

동의제는 FAO/WHO 합동평가팀 결과 CODEX 분과위원회 회의시 국가대표구성 및 비정부 참관인의 발언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었고 26차 총회에서 WHO 규정을 고려하여 신규 규정제정 검토 요청에 따라 검토가 제기된 사항이다(WHO 규정 : 수석대표가 지명한 경우 타 대표가 대표단의 이름으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짐).

미국은 “CODEX 분과위원회 및 특별정부간작업반의 회의운영지침(Guidelines on the Conduct of Meetings of Codex Committees and 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s)”이 있는데 규정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문제 제기, CODEX 사무국은 총회에서 규정신설 검토요청이 있었고 상기 지침은 총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동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에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음을 설명하였다.

논의결과 규정개정안을 28차 총회('05. 6.)로 상정하고 향후 규정집 “규정 V- 회의” 4항과 5항 사이에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9. 집행이사회의 임원 임기 확인(의제 9)

(Clarification of the duration of the term of the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동사항은 '03년도 26차 총회에서 총회 매년 개최를 결정하면서 제기된 문제로서 19차 CCGP('03. 11), 20차 CCGP('04. 5)에서 집행이사회의 구성원인 의장, 부의장, 조정관 임기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20차 CCGP('04. 5)에서 미국은 집행이사회 임원간 임기가 일정해야 하는지(align)에 대한 질의에 근거하여 CODEX 사무국에 FAO 및 WHO 법률고문과 협력하여 토의문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FAO 법률자문관은 의장, 부의장, 지역대표, 지역조정관의 CODEX 규정집 규정에 따른 현 임기를 소개하였다.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회의에서 다음 정규회의까지가 임기이며 연임가능, 지역회원은 선출된 회의로부터 두번째 정규회의까지가 임기이며 연임이 가능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2배기간이며, 조정관은 선출된 회의로부터 3번째 정규회의까지 가능하나 실제로 총회에서 정확한 임기가 결정되며 관행상 2년마다 재임명되었음을 설명하였다.

CODEX 사무국은 회의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동규정이 1960년대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그당시 매년 총회를 몇 차례 개최했기 때문에 년도임기가 아니라 회의를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의 논의가 1) 지역조정관이 임원으로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제안, 2) 지역회원은 장기이며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가 짧은 것이 문제이며 지역조정관과 지역회원의 임기가 달라 임기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배경을 설명하였다.

영국은 집행이사회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속성(consecutive)을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캐나다·아르헨티나에서 동의하였다. 벨기에는 의장과 부의장, 지역대표와 지역조정관은 융통성(flexible)을 두어 운영하며 임기를 년도로 정확히 정하지 말며 회의를 기준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스웨덴·이탈리아·스페인 동의하였다.

CODEX 의장은 국가대표가 아닌 의장과 부의

장은 선출시점으로부터 두 번째 회의시점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본·EU·스웨덴이 동의하였다.

캐나다는 두 차례 회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회원의 경우 연임시 8년동안 재직하므로 너무나 길다는 지적아래 일본은 캐나다의 의견과 동일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가 말한 두 차례 회의라는 것은 2년을 말함을 명백히 하였다.

카메론 대표는 2년이란 기간은 모기구의 기간(biennium)과 일치(synchronize)해야 한다고 제안, 스페인은 지역조정관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임기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 캐나다는 2차례 회의를 기준으로 하되 매년 회의 개최를 전제하에 2차례 회의를 임기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에 스위스 동의하였다.

미국은 지역조정관은 6년간 임기이지만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가 짧아 문제가 있으므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선출(election)은 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스위스는 우리가 하는 것은 토의이며 총회에서 결정되도록 동내용을 상정하자고 하면서 매년 회의 개최를 전제하에 2차례의 회의를 duration으로 하자는 캐나다 의견에 동의하였다.

전반적으로 두 차례 회의를 연속하여 재입하고 한번 연임, 최대 3~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동분과위원회는 집행이사회 임원의 임기를 2차례 회의를 기준으로 연임하되 최대 3~4년에 대한 조화방안에 대한 토의문서를 CODEX 사무국에게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차기 CCGP에서 검토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10. CODEX 규격의 수락 및 통보절차 [의제 10]

(Acceptance and Notification Procedures for Codex Standard)

동의제는 21차 총회('95. 6.) 요청에 따라 12차 CCGP('96)부터 14차 CCGP까지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안으로 지난 19차 CCGP('03. 11.)에서 다시 제안된 사안이다.

CODEX 규격수락이란 국내식품의 기준·규격에 CODEX 규격적용사실을 CODEX 사무국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준용범위에 따라 1) 완전수락(full acceptance) 2) 특정변경수락(acceptance with specified deviations) 3) 자유로운 유통 (free distribution)이 있다. 현재 CODEX 지침에서는 CODEX 규격의 수락여부와 수락범위를 로마사무국으로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CODEX 사무국의 문서배경 설명이후 CODEX 의장은 통보규정이 현재까지 한건도 받은 적이 없음을 알리며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EU는 통보 및 수락규정이란 WTO 출범이후 회원국에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삭제 요청, 미국은 수락절차 삭제에 지지하면서 특정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여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CI와 CODEX 의장은 WTO/SPS 통보규정은 CODEX와 동일한 목적이 아니며 국가수준에서 CODEX 규격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원국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락절차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CODEX 사무국은 현재까지 수령한 회원국의 수락현황이 하나도 없으며 1) SPS 협정 운영 검토시 현재는 국가가 CODEX 규격을 변경하여 적용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보규정에 국

가조치가 국제규격을 준용했을 경우도 포함시키는 안이 검토중이며 2) 국제규격 사용의 모니터링은 SPS 위원회의 정규의제임을 지적하였다.

CODEX 사무국은 CODEX 일반원칙, 정관 d) 항과 수락절차지침에서 수락절차를 삭제한 규정 접수정안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11. 규정 IV.1의 대표 용어 해석(의제 11)

(Interpretation of the term "delegate" under Rule IV.1 of the Rules of Procedure)

19차 CCGP에 이어 20차 회의에서 집행이사회 의 임원에 대한 규정중 『집행이사회의 임원은 한 국가에서 한명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it being understood that not more than one delegate from any one country shall be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이 2개국으로 이루어진 북미지역의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그당시 FAO 및 WHO 법률고문에게 의장과 부의장은 규정 IV.1 항에 따라 "delegates"로 검토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문서제출을 요청하였다.

금번 회의시 FAO 법률자문관은 동논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집행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과 북미지역회원국이 2개 지역임을 고려할 때 북미의 지역회원이 임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규정 III.1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CODEX 회원국의 대표로부터 선출되며 개인자격이며 국가대표가 아님을 언급하였다. 지역조정관과 지역회원은 지역을 근거로 선출되어 Country basis이므로 집행이사회의 임원간에 명백한 차이가 있어 "delegate" 용어는 지역회원과 조정관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총회에서 규정IV.1 시행을 검토하길 원한다

면 i)규정에 대한 해석문(interpretative statement)을 채택하거나 ii) 규정IV.1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인도는 규정 IV.1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CX/GP 04/21/12 문서의 14항과 같이 집행이사회의 구성원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포괄한 현재 관행 유지에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의장과 부의장도 자국의 지속적인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재직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네덜란드대표는 EU를 대표하여 소규모의 회원을 가진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이 지역 구성원을 검토하면서 발견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스페인은 집행이사회의 회원구성에 있어 북미지역이 4명이나 되어 과도하게 회원자격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하며 지역별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의장과 부의장은 집행이사회의 기능상 "delegate"가 아니며 회원국을 대표하지 않으며 CODEX 대표임을 강조하며 북미지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동사항에 대해 모든 관계자가 실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고 동사항의 검토여부 및 검토 방안등에 대한 지침제공요청을 총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12. 기타사업, 향후 작업 및 차기 회의 날짜 · 장소 (의제 12)

가. 『위해분석 작업원칙초안 작업반』 결과보고

캐나다와 아르헨티나가 공동의장으로 2004. 11. 6(토) "위해분석 작업원칙초안 작업반회의"를 실

시하였고 그 결과와 참석자명단을 프랑스 사무국에서 편집하여 차기 회의이전에 공람할 예정임을 알렸다.

나. 차기 회의의제

i) 집행이사회의 임원 임기 확인, ii) CODEX 규격 수락 규정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다. 차기 회의날짜 및 장소

22차 정규회의는 2005. 4. 11~15 개최예정으로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잠정결정하였다.

IV. 제언

금번 회의는 FAO/WHO 합동평가팀 권고사항에 대한 제26차 총회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19차 CCGP에 연이어 개

최된 연계회의로서 향후 CODEX 조직·운영의 개혁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결과 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분과위원회의 적용을 위한 위해분석지침, 작업 우선순위설정기준, 작업반 및 전자작업반 지침안,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 참여원칙,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 의장권리 관련 규정 등을 합의를 이루어 28차 총회로 상정기로 하였다.

동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CODEX 내부규정이지만 내부규정을 통해 결정된 최종 CODEX 기준규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CODEX 참여방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CODEX 작업에 대하여 범정부간 CODEX 협의조정강화, CODEX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을 통한 전문대응력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활동동향이나 CODEX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는 CODEX 사무국(로마)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www.codexalimentarius.net/web/standard_list.do?lang=en) 또는 국내 운영 홈페이지(<http://codex.moh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작업상황 요약표

(제21차 일반원칙분과위원회)

| 의제내용 | 단계 | 집행기구 | 참고 (ALINORM04/27/33A) |
|---------------------------------|----|-------------------------|--------------------------|
| 식품첨가물 및 오염물질분과위원회에서 적용할 위해분석원칙안 | 8 | 정 부 28차 총회 | para. 24 부속서 II |
| CCFAC 노출평가정책안 | 8 | 정 부 28차 총회 | para. 25 부속서 III |
| 작업우선순위 설정기준개정안 | | 정 부 28차 총회 | para. 36 부속서 IV |
| 작업반 지침안 | | 정 부 28차 총회 | para. 47 부속서 V |
| 전자작업반 지침안 | | 정 부 28차 총회 | para. 54 부속서 VI |
| CODEX 작업에 국제비정부기구 참여 원칙 검토 | | 정 부 28차 총회 | para. 81 부속서 VII |
|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안 | | 정 부 28차 총회 | para. 104 부속서 VIII |
| 의장권리 규정 개정안 | | 정 부 28차 총회 | para. 109 부속서 IX |
| 규정 IV.1항에 의거 대표(delegate) 용어 해석 | | 28차 총회 | para. 132 |
| CODEX 규격수락 관련 규정 | | 사무국 22차 CCGP | para. 122 |
| 집행이사회의 임원 임기 확인 | | 사무국 법률고문 22차 CCGP | para. 117 |